

사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의안 번호	2008-제 호
----------	----------

제출일자 : 2008. 2.

발 의 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일치,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안 및 국어맞춤법에 등에 의한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반영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안 제1조)

다.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사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제3조 중 “상당한”을 “적당한”으로 한다.

제4조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4호 중 “2개이상”을 “2개 이상”으로, “2개기관”을 “2개 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결을 얻어”를 “의결을 받아”로, 제4항 중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으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사천시의회회의규칙”을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를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사천시의회회의규칙”을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사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p>	<p>제명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u>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시행령</u>」 제60조----- ----- ----- -----.</p>
<p>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u>상당한</u>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 ----- ----- --- <u>적당한</u> ----- -----.</p>
<p>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동일기관에 <u>2개이상</u> 또는 <u>2개기관</u> 이상에 제출된 것</p> <p>4. (생략)</p>	<p>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 ---- <u>각호의 어느 하나</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2개 이상</u> ---- <u>2개 기관</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u>의결을 얻어</u>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p>	<p>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 ----- ----- ----- ----- ----- <u>의결을 받아</u> ----- -----.</p>

<p>② ~ ③ (생략)</p> <p>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u>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u>----- ----- <u>10일 이내</u>----- ----- ----- -----.</p>
<p>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p> <p>1. ~ 3. (생략)</p>	<p>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u>각호의 어느 하나</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u>휴회</u>중의 기간을 제외한 <u>7일이내</u>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심사보고) ① ----- ----- ----- ----- <u>휴회 중</u>----- ----- <u>7일 이내</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u>지방자치법</u> 및 <u>사천시의의회회의규칙</u>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제16조(징계) ----- ----- ----- <u>「지방자치법」</u> -- <u>「사천시의의회 회의 규칙」</u>----- -----.</p>
<p>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사천시의의회위원회조례</u>와 <u>사천시의의회회의규칙</u>을 준용한다.</p>	<p>제17조(준용규정) ----- ----- <u>「사천시의의회 위원회 조례」</u> --- <u>「사천시의의회 회의 규칙」</u>-----.</p>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